

#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항 의거 '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기간 : 2024. 2. ~ 2024. 12.

나. 총사업비 : 970,785천원 (구 재난관리기금 50%, 시 재난관리기금 50%)

다. 침수로 인한 피해 : 없음

라. 추진실적 및 성과 : 물막이판1,222개소(1,737m) 역류방지시설 576개소 설치

1) '24년 동별 설치 현황

구 분	세대수	설치 현황			비고
		물막이판 (개소)	역류방지시설 (개소)	계	
합 계	625	1,222	576	1,798	
가산동	23	60	6	66	
독산1동	56	51	96	147	
독산2동	104	177	116	293	
독산3동	63	121	61	182	
독산4동	45	82	44	126	
시흥1동	133	262	132	394	
시흥2동	-	-	-	-	
시흥3동	31	117	9	126	
시흥4동	79	155	29	184	
시흥5동	91	197	83	280	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향후계획

- 1) 2025. 1. : 침수방지시설 계획 수립 및 공사 발주
- 2) 2025. 2. : 공사 계약 및 착공
- 3) 2025. 3. ~ 5. :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우기전 집중 설치 및 홍보 추진
- 4) 2025. 12. : 공사 준공

#### 나. 관련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5조 및 제25조의2
- 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및 제3조

# 관계법령

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1. 5.] [법률 제18685호, 2022. 1. 4., 타법개정]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국민의 책무)**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**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  2.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
  3.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
  4.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  5.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
  6.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
  7.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·관리
  - 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·시설 및 인력의 지정
  8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## 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4. 11.] [법률 제19331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풍수해” (風水害)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 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
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관리

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가. 삭제 <2017. 10. 24.>

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
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
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
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